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04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정성국·김용태·김대식

이헌승 • 이성권 • 박수영

조정훈 • 유용원 • 서천호

진종오 · 곽규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의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이라 함)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 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전 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부여되 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사안 조사 지원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관계 직원은"을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및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관계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
- ⑤ 교육감 또는 교육상은 악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성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 담자가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⑦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6항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8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위촉·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
	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및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
	<u>력</u>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관계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
	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
	<u>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u>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u>있다.</u>
<u><신 설></u>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
	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u>수 있다.</u>
<u><신 설></u>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
	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자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6 항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 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 에 대하여 범죄 전력을 확인하 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 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 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u>⑤</u> (생 략) <u><신 설></u>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범죄 전
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u>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u>
런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관련범죄 전
럭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u>⑨</u> 제1항 및 제4항에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⑩ (현행 제5항과 같음)
<u> </u>
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u>다.</u>